

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일시

2021. 10. 24.(일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 국제조세관리관실
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
배포 일자: 2021년 10월 24일

담당 과장	최인순 과 장	044) 204-2861
담당 자	심은진 사무관	044) 204-2872

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.6% 증가 -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및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검증 예정-

- (결과 개요)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, 3,130명이 총 59.0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.6% (445명) 증가하였으나, 금액은 1.5% (0.9조 원) 감소하였습니다.
- (신고인원 증가이유) '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(10억 원 → 5억 원)와 '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*이외에,
 - *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,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됨
 -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 제고의 결과로 보입니다.
- (신고금액 감소이유)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고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.
- (향후 계획)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.
 - 해외금융계좌 미(과소)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, 형사 고발,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.
 - 지난해부터 수정·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%까지 늘었고,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,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·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.

1. 결과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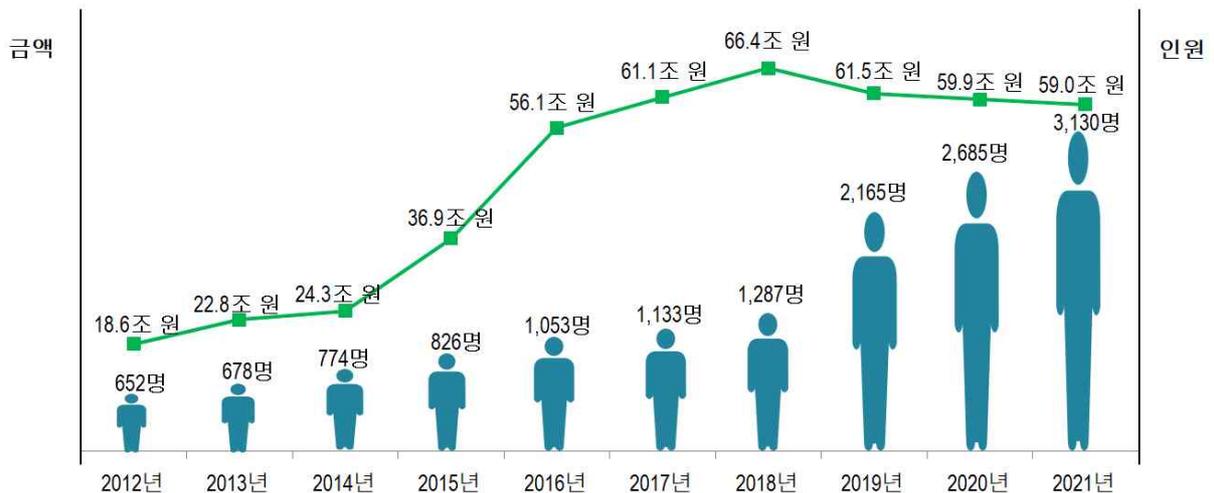
-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,130명,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,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16.6%(445명) 증가하였고, 신고금액은 1.5%(0.9조 원) 감소하였습니다.
- 개인신고자는 2,385명이 9.4조 원을 신고하여, 전년대비 인원은 26.3% 증가, 금액은 17.5% 증가하였으며,
-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, 법인 수는 6.4% 감소, 금액은 4.4% 감소하였습니다.

《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》

(명, 개, 조 원, 전년대비 증가율)

구 분	2021년			2020년	
	인 원	신고 계좌 수	신고 금액	인원	금액
전 체	3,130 (16.6%)	20,077 (8.1%)	59.0 (△1.5%)	2,685	59.9
개인	2,385 (26.3%)	9,047 (21.2%)	9.4 (17.5%)	1,889	8.0
법인	745 (△6.4%)	11,030 (1.6%)	49.6 (△4.4%)	796	51.9

《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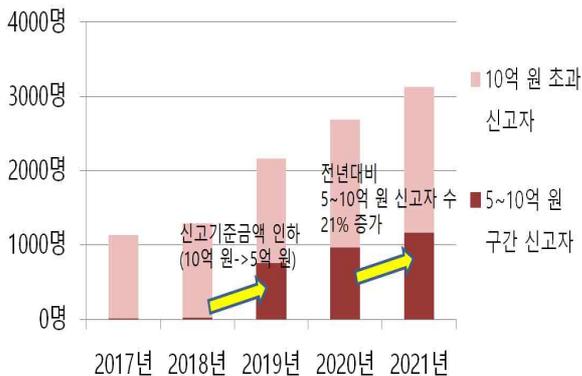
2. 신고인원 증가 및 신고금액 감소 이유

- (신고인원 증가 이유) '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* (10억 원→5억 원)되고,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'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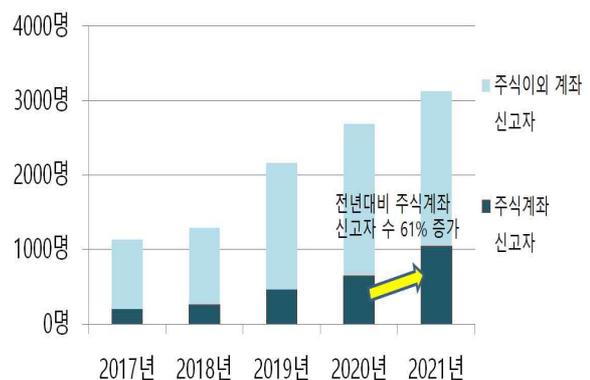
* 5~10억 원 구간 신고자 수 '20년 28%, '21년 21% 증가

- 또한, 제도 홍보에 따라 신고자의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되었고,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(금융정보교환자료, 외환거래자료 등 활용) 적중률이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.
- 그 외,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(전년대비 61% ↑)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《 5~10억 원 구간 신고자 증가 추이 》



《 주식 계좌 신고자 증가 추이 》



- (신고금액 감소 이유)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*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**하면서 신고금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.

* 미국 기준금리 1.75%('20년 1~2월)에서 0.25%으로 감소('20년 3~12월), 한국 0.5% 유지(자료출처: Fed, 한국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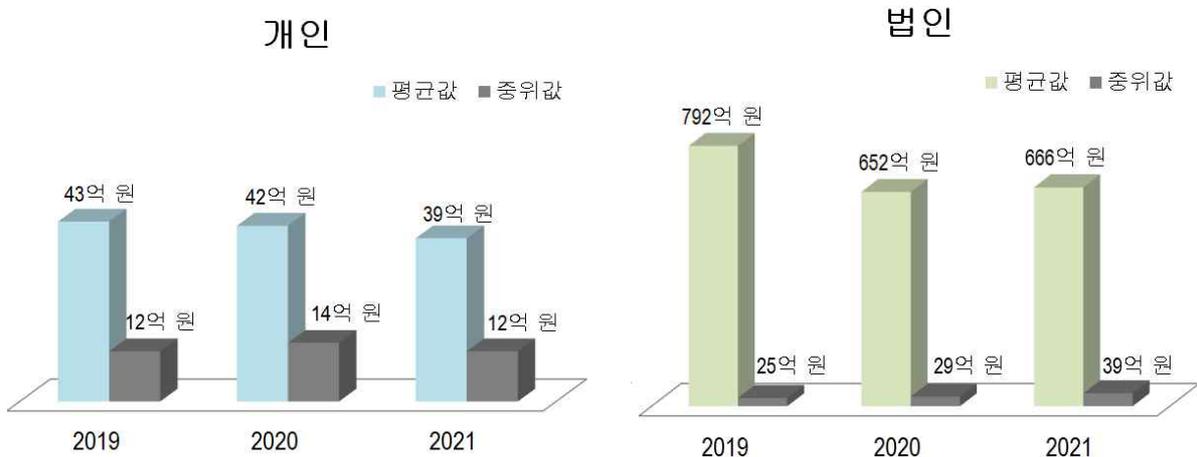
** '20년 발행규모는 3.5조 원으로 '19년(15.1조 원) 대비 76.8% 감소

1. 신고금액 평균치 및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

○ (평균·중위값) 최근 3년간 신고금액의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은데, 이는 고액 계좌잔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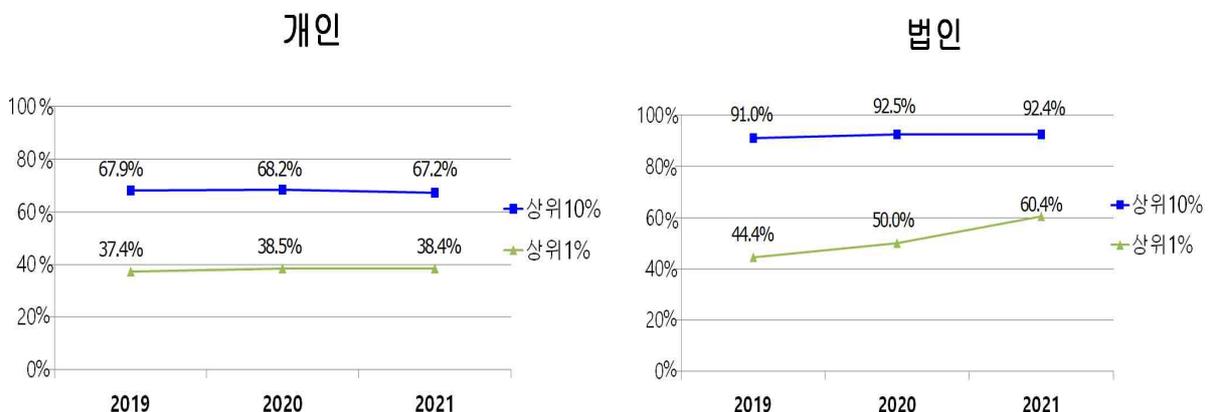
* 개인 상위1%(23명) 평균 1,572억 원, 상위10%(238명) 평균 266억 원
 법인 상위1%(7개) 평균 42,830억 원, 상위10%(74개) 평균 6,196억 원

《 최근 3년간 신고금액 평균·중위값 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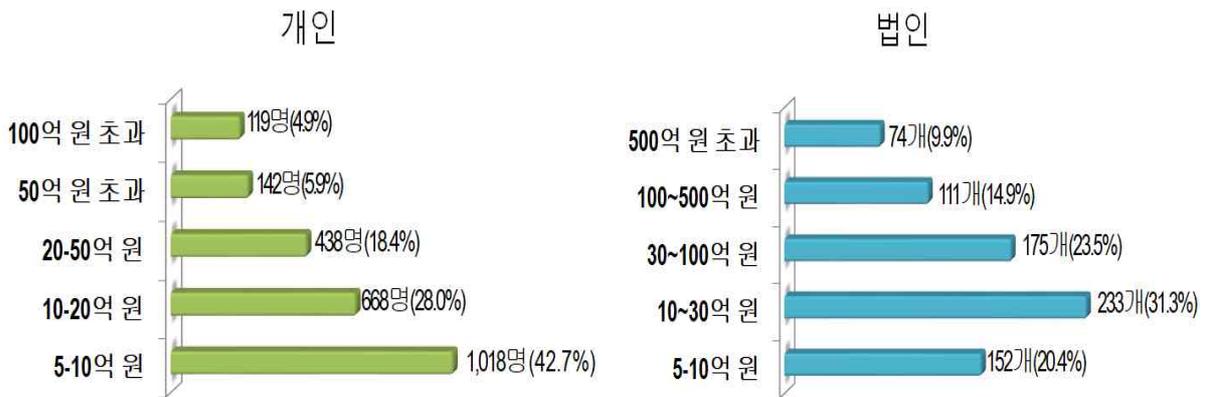
○ 개인과 법인 신고자의 전체 신고금액 대비 상위 1% 및 상위 10% 신고금액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《 최근 3년간 개인·법인 상위 1%, 10% 신고금액 비율 》



- (신고금액 구간별 분포) 개인은 5~10억 원 구간에, 법인은 10~30억 원 구간에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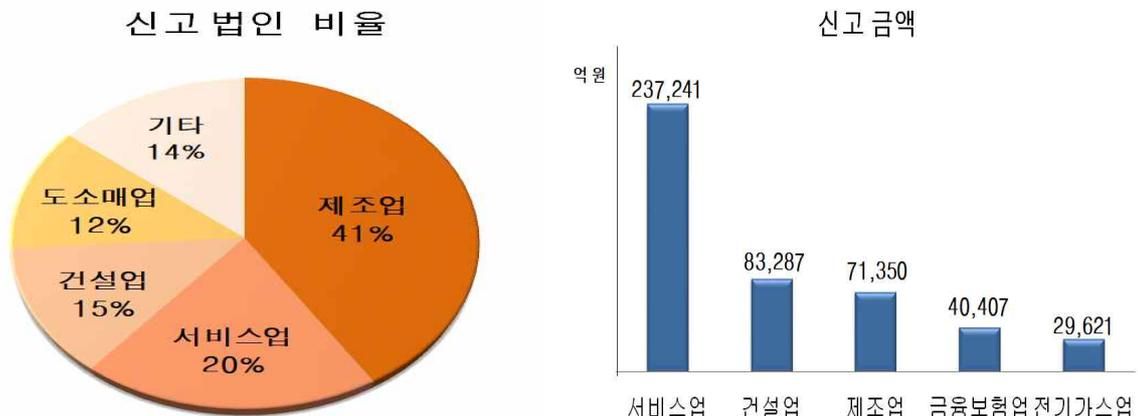
《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》



2. 법인 업종별 신고현황

-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(306개)이 41%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서비스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신고 금액은 서비스업(23.7조 원)이 48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건설업, 제조업, 금융·보험업, 전기·가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
《 법인의 업종별 신고법인과 신고금액 분포 》



3. 해외금융계좌 종류별 신고현황

- (올해 신고금액)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.6조 원(50.0%)으로 가장 많고,
 - 이어서 예·적금계좌가 22.6조 원(38.2%),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.9조 원(11.8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
《 '21년 개인과 법인의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》

(억 원)

구분 \ 계좌종류	합 계	예·적금	주식	파생상품	기타
개인	94,190	47,083	29,071	1,515	16,521
법인	496,158	177,435	266,596	8,142	43,985

- (신고추세) 예·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급감(전년대비 23%↓)하여 5년 간('17~'21년) 감소세인 반면, 주식계좌 잔액은 꾸준히 증가(전년대비 18%↑)하였는데,
 - 이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*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,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**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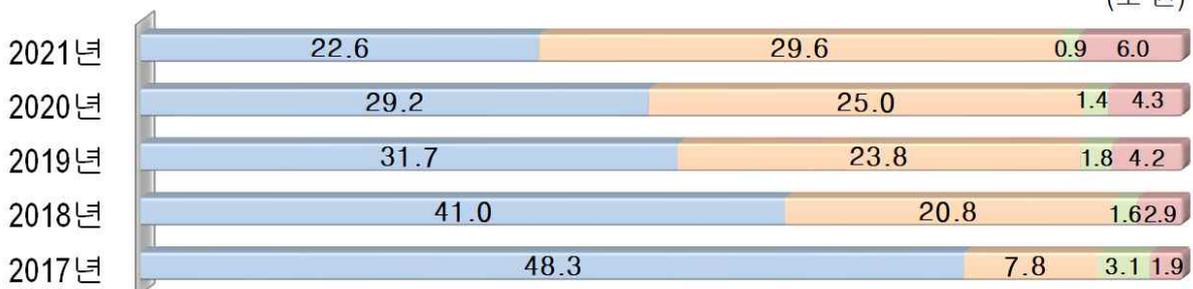
* 전년대비 통화공급량(M2): 미국 25%증가, 한국 10%증가(한국은행)

** 전년대비 S&P지수 16% 상승, 니케이지수 16% 상승 등 (S&P, 니케이)

《 최근 5년간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》

■ 예·적금 ■ 주식 ■ 파생상품 ■ 기타

(조 원)



4. 국가별 신고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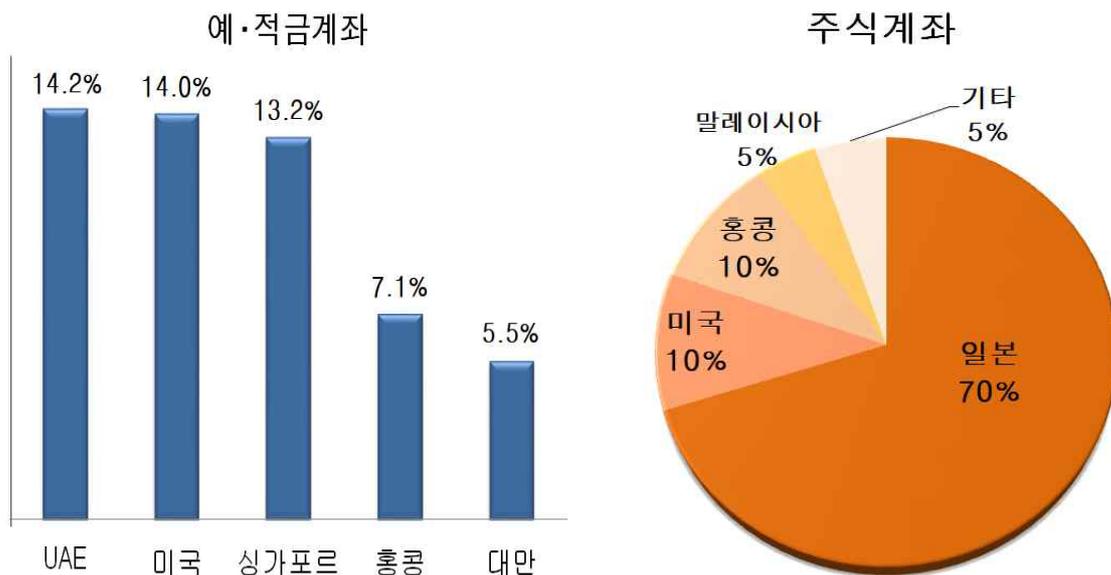
- (계좌개설 국가 수) 올해 신고된 총 20,0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, 계좌개설국가 수가 전년(144개)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.
- (계좌별 신고현황)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·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,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습니다.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(95.7%)가 대부분이며,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%를 차지하였습니다.

《 국가별 주요 계좌 신고금액 및 비중 》

(조 원)

계좌 종류	일 본	미 국	홍 콩	싱가포르	UAE
전체 신고액	21.7	8.5	5.0	3.2	3.2
예·적금 (비중)	0.7 (0.3%)	3.2 (37.1%)	1.6 (31.9%)	3.0 (91.3%)	3.2 (100%)
주식 (비중)	20.7 (95.7%)	3.0 (35.8%)	3.0 (59.4%)	- (0.01%)	- (0%)

《 주요 계좌별 국가 신고 분포 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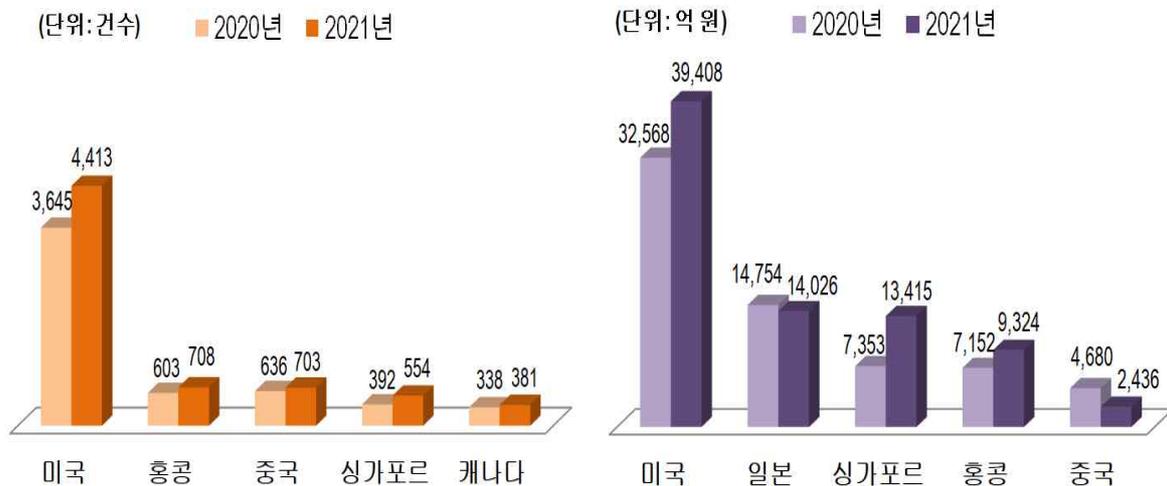
○ (개인 신고현황) 올해에도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 금액은 미국*(4,413개, 3.9조 원)이 가장 많았습니다.

* 개인 신고 계좌 수의 49%(신고금액의 42%)가 미국에 개설

- 홍콩,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*을 보였는데, 최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 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

* 전년대비 신고계좌 수(금액) 증가율: 홍콩 17%(30%), 싱가포르 41%(82%)

《 개인의 국가별 신고계좌 건수와 신고금액 분포 》



○ (법인 신고현황) 법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 (1,608개)이, 신고 금액은 일본(20.2조 원)이 가장 많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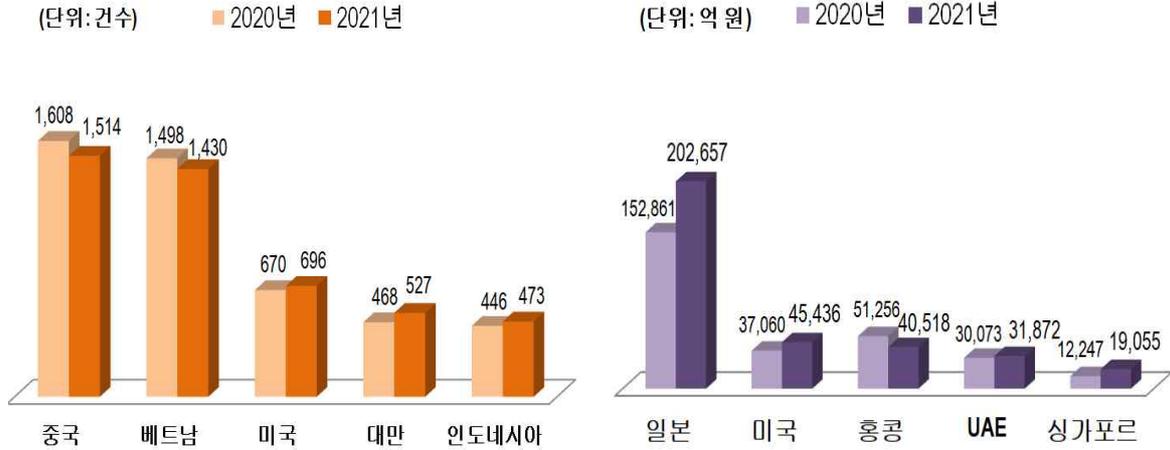
- 미국과 싱가포르의 신고금액은 높은 증가율(각각 23% ↑, 56% ↑)을 보이며 전체 신고국 중 순위가 상승*했습니다.

* 미국 4위('20년) → 2위('21년), 싱가포르 8위('20년) → 5위('21년)

- 반면 중국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많았으나, 올해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대폭 감소*(84% ↓)하였습니다.

* '20년 7.6조 원(신고국가 중 2위), '21년 1.2조 원(신고국가 중 10위)

《 법인의 국가별 신고계좌 건수와 신고금액 분포 》



5. 각 지방청별 신고현황

- 개인신고자의 신고금액 기준 전체 상위 7개 세무서와 지방청별 1위 세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《 개인 신고금액 상위 7개 세무서 》

(억 원, %)

세무서 구분	서울청	서울청	서울청	중부청	서울청	서울청	서울청
	용산	삼성	반포	분당	강남	동대문	성북
신고금액	13,850	7,944	7,489	7,160	6,818	5,521	4,466
신고금액비율*	14.7	8.5	8.0	7.6	7.3	5.9	4.8

* 개인 신고금액(9.4조 원)대비 해당 세무서 개인 신고금액

《 개인 신고금액 지방청별 1위 세무서 》

(억 원, %)

세무서 구분	서울청	중부청	인천청	대전청	광주청	대구청	부산청
	용산	분당	고양	동청주	북전주	수성	제주
신고금액	13,850	7,160	735	464	46	229	1,943
신고금액비율*	19.2	50.9	34.3	33.4	22.6	31	52.1

* 각 지방청별 개인 신고금액 대비 해당 세무서 개인 신고금액

Ⅲ

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혐의 검증

1.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자를 확인한 후, 과태료 부과, 형사고발, 명단 공개 등 법적 제재수단을 집행하였습니다.

* [붙임3]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주요 사례

- (과태료 부과)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대하여 과태료 1,85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.

《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》

(명, 억 원)

구분	합계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.6
인원	493	20	35	43	40	24	47	53	62	40	68	61
부과액	1,855	11	15	116	321	44	106	120	213	55	474	380

- (형사고발)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~20%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(병과 가능),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하였습니다.
- (명단공개)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.

《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·명단공개 현황 》

(명)

구분	합계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.6
형사고발	68	-	-	1	7	18	12	11	14	5
명단공개	7	-	1	1	2	1	1	1	-	

2.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연소자 역외탈세 혐의 검증

- 앞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, 외국환 거래자료,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.
 - 이 외 해외부동산 정보, 해외 법인현황, 국외소득자료 등을 개별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'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'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.
- 특히,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데,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하여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.
 - 나아가 역외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·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.
-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, 미(과소)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, 미(과소)신고 과태료 이외 미(거짓)소명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입니다.
-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 편법증여 및 국외 소득 탈루 방지, 역외세원의 양성화라는 제도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검증에 집행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IV

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

- 신고기한 이후에 미(과소)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, 신고 시점에 따라 미(과소) 신고금액의 최대 90%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, 명단공개*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.

*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

- 그러나 미(과소)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, 자발적으로 수정·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< 기한 후 신고, 수정 신고 시 감경률 >

기한 후 신고 시점	수정신고 시점	과태료 감경률
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	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	90%
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	신고기한 후 1년 이내	70%
신고기한 후 1년 이내	신고기한 후 2년 이내	50%
신고기한 후 2년 이내	신고기한 후 4년 이내	30%

V

향후 추진방향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,
 - 국가간 정보공조 확대,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, 관련 제세 추징, 과태료 부과,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역외세원의 양성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붙임 1
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

□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

-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*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
* '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, '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

□ 신고의무자

- (의무자)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
- (면제자)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금융회사, 국가의 관리·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

□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

-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*에 은행업무 및 증권,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.
* 금융업, 보험·연금업,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
- 신고대상 자산 범위에는 현금,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,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*이 포함됨.
*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에 개설한 계좌*는 '22년 1월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신고대상('23년 6월)에 포함

□ 미신고자 제재

- 미(과소)신고금액의 최대 20%* 과태료 부과 및 미(과소)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
* '21.2.17.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
- 미(과소)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(거짓)소명금액의 20% 과태료 부과
- 미(과소)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

○ 미(과소)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

《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도입과 변경 》	
구 분	연도별 변경 내용
미신고 과태료	· '11년 3~9%, '12~15년 4~10%, '16년 이후 10~20%
명단공개 도입	· '13년: 50억 원 초과자 명단공개 시행
형사처벌 도입·강화	· '14년: 50억 원 초과자 형사처벌 시행 · '19년: 벌금 하한(13%) 신설(20% 이하에서 13%~20%)
미소명 과태료	· '15년 10%, '16년 20%, '20년 법인까지 소명의무 도입

○ 미(과소)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

《 과태료 부과 기준 》	
○ (미·과소신고 과태료) 신고기한 내 미(과소)신고한 경우, 미(과소) 신고금액의 10%~20%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(국조법§62①)	
미(과소)신고금액	과 태 료
20억 원 이하	해당금액 × 10%
20억 원 ~ 50억 원	2억 원 + 20억 원 초과금액 × 15%
50억 원 초과	6.5억 원 + 50억 원 초과금액 × 20%
* '21. 2. 17.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	
**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 또는 계좌정보의 일부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 과태료의 50%를 감경 부과	
○ (미·거짓소명 과태료)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위반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미(거짓)소명시 미(거짓)소명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	

붙임 2

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

□ 제도 개요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□ 지급요건 및 지급액

-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'중요한 자료'의 의미
 - 해외금융계좌정보(계좌번호·잔액, 계좌주 성명 등)를 제공*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- * 예) 해외금융계좌 사본,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
- 포상금 지급액: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~15%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

과태료 금액(벌금액)	부과 기준
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	15%
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	3천만 원 + 2억 원 초과액의 10%
5억 원 초과	6천만 원 + 5억 원을 초과액의 5%

* 탈세제보 포상금(40억 원 한도)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(20억 원 한도)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

** 과태료 금액(벌금액)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(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)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□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

- 국세청 누리집*, 전화,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 가능
- * 「국세청 누리집, www.nts.go.kr」 → 「상담/제보」 → 「탈세제보」 → 「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」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(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 제5항)

붙임 3

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 사례

사례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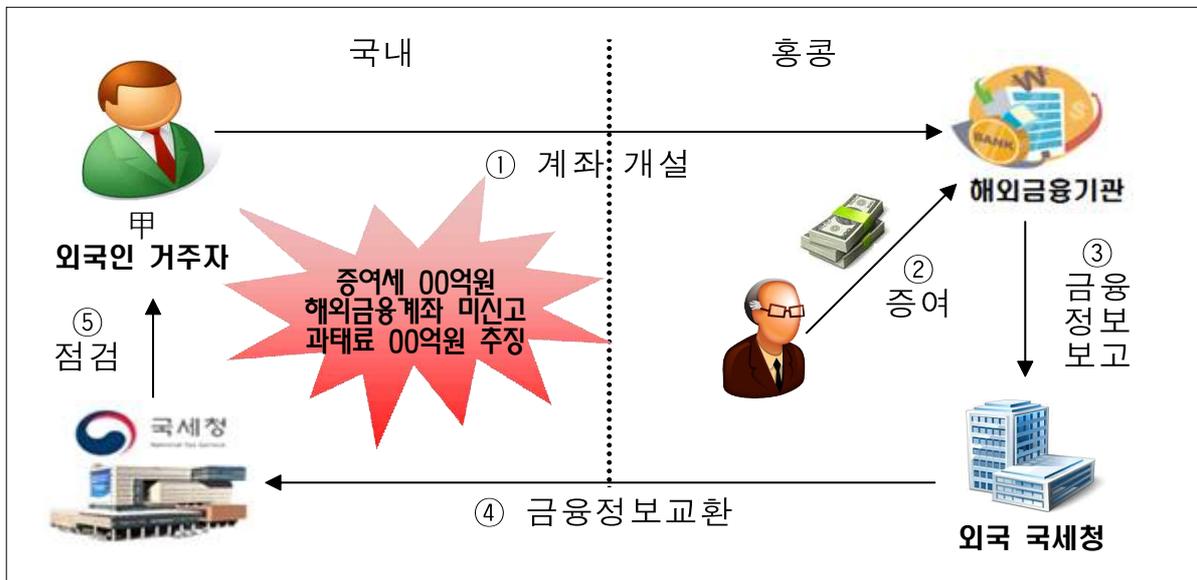
외국국적 한국 거주자 甲은 父로부터 홍콩 계좌로 예금을 증여받았으나 해외금융계좌, 증여세 신고누락

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○○○○

○ 주소지 : ○○시

□ 주요 적발상황



- 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甲은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
- 홍콩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甲의 '18년 해외계좌 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
- 甲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거주자인 것과 해외 금융계좌의 자금 원천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확인

□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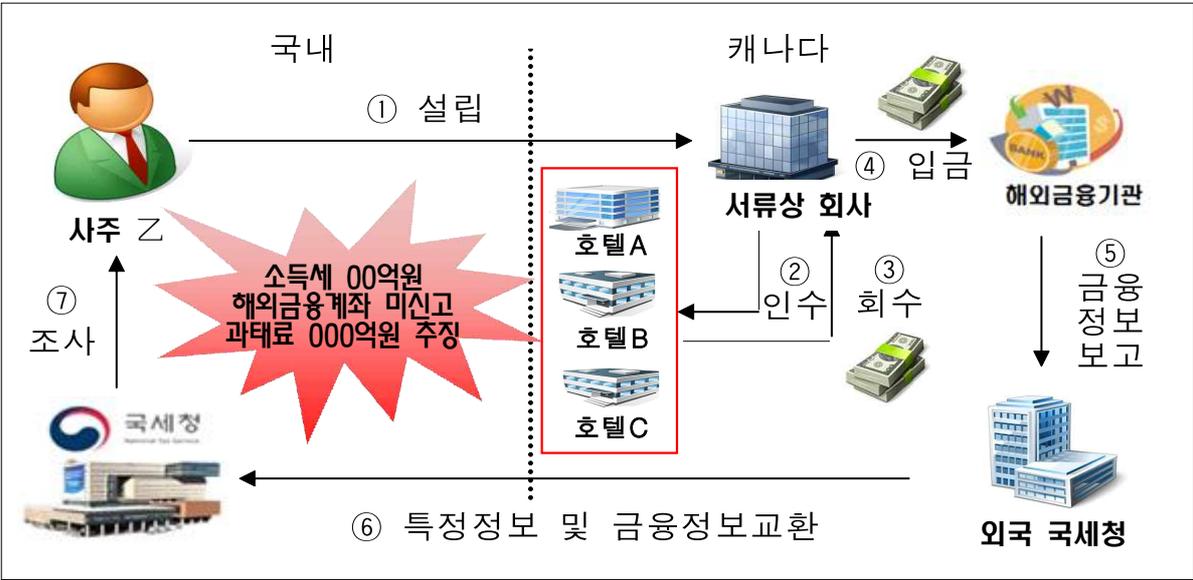
- 甲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및 증여세 00억 원 추징

사례 2 국내기업의 사주 乙이 해외 서류상 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

□ 인적사항

- 상 호: 내국법인 A
- 대표자(사주): ○○○
- 소재지: ◎◎시
- 업 종: 숙박/호텔

□ 주요 적발상황



- 사주 乙이 캐나다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캐나다 소재 호텔 3곳을 00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실시
- 캐나다, 싱가포르, 벨리즈 세이셸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캐나다 서류상 회사와 호텔이 사주 乙의 소유라는 사실과
 - 사주 乙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00억 원을 확인

□ 조치사항

- 사주 乙에게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 원 및 소득세 00억 원 추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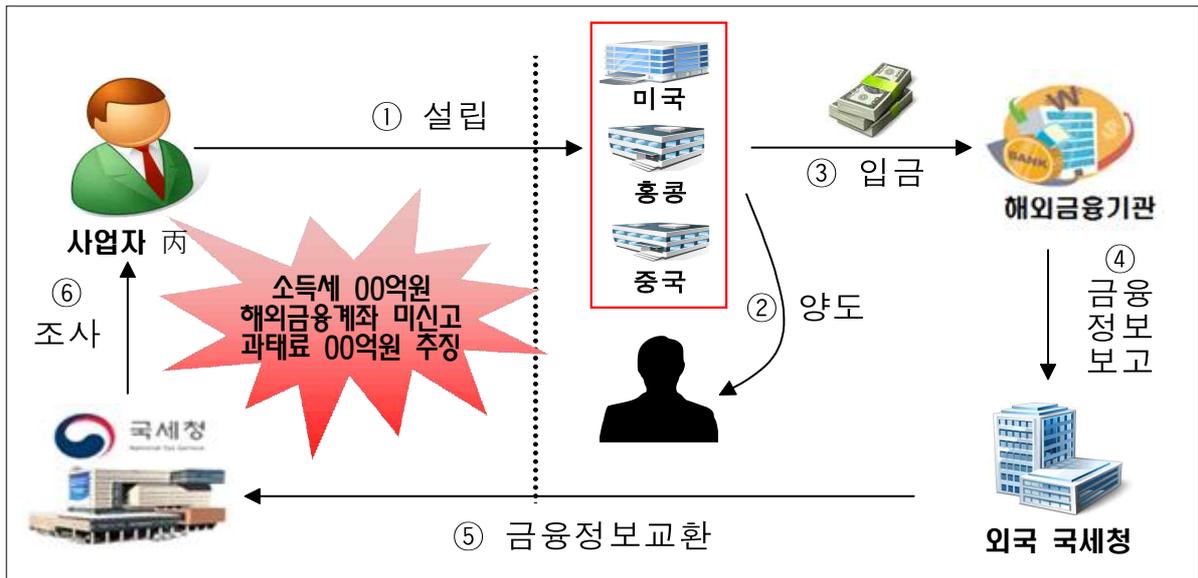
사례 3 사업자 丙은 해외주식 양도 대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

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○○○○

○ 주소지 : ○○시

□ 주요 적발상황



- 국내 개인사업자 丙은 미국, 중국, 홍콩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을 축적하였으나,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실시
- 국내 경제활동, 의료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자 丙이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입증
-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보하여 해외금융계좌 잔액 000억 원과 미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 00억 원을 확인

□ 조치사항

- 丙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및 소득세 00억 원 추징하고,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고발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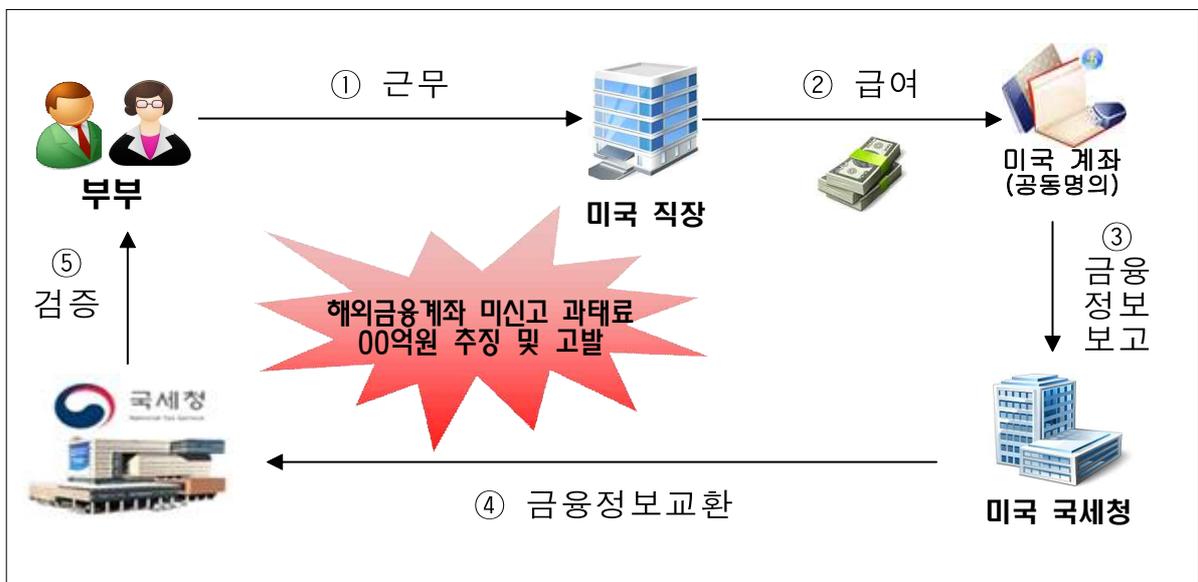
사례 4 수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

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○○○, ○○○

○ 주소지 : ○○시

□ 주요 적발상황



- 국내 거주자인 부부가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 수령
- 부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국내 보유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과 외환거래 자료에 착안하여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
- 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근거로 납세자를 설득하여 부과제척 기간 내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 확인

□ 조치사항

-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하고,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고발 조치